

제 호

교육수료증

성명:

생년월일:

소속:

교육과정:

교육종류:

교육이수등급:

직무분야:

교육기간: . . . ~ . . . (시간)

위 사람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교육기관의 장

직인

유의사항

해당 교육수료 내용은 교육훈련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교육기관에서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직접 통보되고 있으며,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등에 바로 적용이 필요한 경우 교육생이 직접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